**동일모델 확인 신청서**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접수번호 | **공란** | 접수일 | **공란** | 처리기한 | **공란**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신청인 | 업체명 | 사업자등록번호 | 성명(대표자) |
| 전화번호 | 팩스번호 | 전자메일 |
| 주소 |
| 담당자(대리인) | 전화번호 | 전자메일 |
|  |
| 제품정보 | 품목 | 품목분류번호(HS) | 모델명 |
| 생산업체명 | 생산국명 | 수입업체명 |
| 중량/용량/매수 | 안전∙표시기준상의 모델 구분 |
| 기존 자가번호/기존 신고 확인증 번호 |
|  |
| “동일모델임을 증명함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 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,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∙표시기준」 제7조에 따른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|
| 신청인  |  (서명 또는 인) |
| **KOTITI시험연구원장 귀하** |
| 첨부서류 |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. 제품의 사진 1부3.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(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) 1부- 배합비는 그 합이 100%일 것- 영업기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비를 범위로 표시하거나, 성분을 나열하고 “언급한 성분 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은 없음을 보증함” 등의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. 다만, 착향제로 사용된 물질의 조합은 “향료”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체 성분 대비 향료의 배합비 또는 배합 범위를 의무적으로 표시- 성분은 CAS 번호를 같이 명기해야 함.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,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∙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∙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∙ 국내·외 문헌자료 또는 사용 실적 자료∙ 제품의 안전보건자료(PSDS) 등 |
| 유의사항 | 본 확인증은 신청자가 기입한 확인 신청제품이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∙표시기준」에 의한 안전기준을 확인한 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 |
| 자가검사 번호 |  |
|  |
|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∙표시기준」 제7조에 따른 동일모델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  년 월 일 |
| **KOTITI** **시험연구원장**  | **(인)** |